

형사소송법 개정 방안에 관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원 의견조사 결과¹

2026. 7. 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처

I.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및 배경

- 공소청, 중수청 출범 및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수사체계 변화를 앞두고, 검사(공소청)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전건송치 제도의 복원 여부, 형사절차 내 피해자 권리 보장 방안 등에 관하여 회원 간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음.
- 이에 모임의 사무처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관한 모임의 입장을 정하기에 앞서 회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본 의견조사를 실시하였음.
- 본 조사는 2026년 6월 22일 개최된 확대집행위원회 토론에서 확인된, 회원 사이에 존재하는 쟁점을 중심으로 문항을 구성하였음.

2. 조사 개요

조사명	[의견조사] 형사소송법 개정 방안에 관한 민변 회원 의견수렴
조사 대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
조사 기간	2026. 6. 30.(화) 10시 ~ 7. 3.(금) 18시
조사 방법	온라인 설문(회원 대상 소식 채널, 문자 공지를 통한 링크 배포, 개인정보 기입을 통한 회원 여부 확인 및 중복응답 방지)
문항 구성	개인정보 3항목 + 쟁점 문항 9문항(단수응답 4, 복수응답 4, 자유기술 1)
담당	김도희 사무차장, 장길완 간사
공개 기준	응답자가 300명(회원 수의 약 ¼) 이상인 경우 집행위원회 형사소송법 개정 입장 논의에 비중있게 고려하며, 300명 미만인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폐기하는 것으로 안내됨.

¹ 조사 종료(2026. 7. 3.(금) 18:00) 후 수집된 최종 응답 403명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3. 응답 현황 및 분석 기준

- 조사 종료 시점 기준 총 응답자는 **403명**으로, 공개 기준인 300명을 충족하였으며 전체 회원수의 약 1/3에 달함. 아래 결과는 조사 종료 후 수집된 최종 응답 데이터를 집계한 것임.
- 1 내지 7번의 문항별 비율은 해당 문항 응답자 수를 분모로 하여 산출하였음. 복수응답 문항의 경우 각 보기를 선택한 응답자의 비율을 의미하므로, 선택지별 비율의 합계는 100%를 초과할 수 있음.
- 8번 자유의견은 공란, ‘없음’, ‘모르겠음’ 등의 응답을 제외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취지의 내용을 주제별로 분류하여 요약하였음. 하나의 응답에 둘 이상의 주제가 포함된 경우에는 복수 분류하였음.

II. 문항별 응답 결과

1.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에 대한 기본 입장

필수문항, 단수응답

(응답자 403명, 단수응답)

순위	답변 구분	응답 수	비율	비율 그래프
1	3) 부분 존치	185	45.9%	
2	1) 전면 폐지	126	31.3%	
3	2) 전면 존치	85	21.1%	
4	4) 의견없음	7	1.7%	

2.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시 보완해야 할 제도 및 방안

선택문항(존치 입장도 응답 가능), 복수응답

(응답자 373명, 복수응답)

순위	답변 구분	응답 수	비율	비율 그래프
1	1) 보완수사요구 제도의 실효성 강화	292	78.3%	
2	4) 재수사 요청 제도의 개선	219	58.7%	
3	2) 수사심의위원회 강화	176	47.2%	

4	5) 검사 면담 제도 마련	148	39.7%	
5	3) 수사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141	37.8%	

3. 보완수사권 부분 존치 시 범위 및 요건

선택문항(폐지, 전면 존치 입장도 응답 가능), 복수응답

(응답자 344명, 복수응답)

순위	답변 구분	응답 수	비율	비율 그래프
1	2) 동일성 유지 범위 내 허용	215	62.5%	
2	3) 법정 시한이 임박한 경우	150	43.6%	
3	1) 특정 범죄 한정	135	39.2%	

4. 보완수사권 인정 시 행사 방법

선택문항(폐지 입장도 응답 가능), 단수응답

응답자 348명, 단수응답

순위	답변 구분	응답 수	비율	비율 그래프
1	2) 강제수사도 가능(강제수사 허용)	226	64.9%	
2	1) 임의수사만 가능(강제수사 금지)	122	35.1%	

5. 전건송치 제도 복원에 대한 의견

필수문항, 단수응답

응답자 403명, 단수응답

순위	답변 구분	응답 수	비율	비율 그래프
1	1) 현행 유지	174	43.2%	
2	2) 부분적 전건송치 제도(중대 강력범죄 등에 대해서만 전건 송치) 도입	96	23.8%	
3	3) 완전한 전건송치 제도 복원	95	23.6%	

4	4) 조건부 전건송치 제도(보완수사권 폐지 전제로 전건송치) 마련	27	6.7%	
---	---	----	------	---

6. 경찰 사건 종결권 유지 시 피해자 권리 구제를 위한 제도

필수문항, 복수응답

응답자 403명, 복수응답

순위	답변 구분	응답 수	비율	비율 그래프
1	2) 불송치 이유 기재 의무화 및 상세화	351	87.1%	
2	4) 피해자 이의제기권 신설	321	79.7%	
3	1)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부여	302	74.9%	
4	3) 검사의 시정조치 요구권 강화	219	54.3%	

7. 형사소송법 개정 시 우선 포함되어야 할 피해자 권리 보장 방안

필수문항, 복수응답

응답자 403명, 복수응답

순위	답변 구분	응답 수	비율	비율 그래프
1	1) 수사 진행 상황 통지 의무화	324	80.4%	
2	2) 수사기록 열람·등사권 허용	319	79.2%	
3	3) 피해자 참가제도(부대공소제도) 도입	268	66.5%	
4	4) 재정신청 제도 실질화	239	59.3%	
5	6) 양형심리를 위한 판결전조사 도입	216	53.6%	
6	5) 불필요한 변론 제한(Rape Shield Law 등)	177	43.9%	
7	7) 법관 기피신청권 부여	112	27.8%	

8. 자유의견 (검찰 개혁 관련 민변의 추진 방향 및 대안)

- 자유의견 응답 265건 중 ‘없음’, ‘모르겠음’ 등을 제외한 88건에 대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취지의 내용을 주제별로 분류하여 요약하였음. 하나의 응답에 둘 이상의 주제가 포함된 경우에는 복수 분류함.
- **검찰개혁 논의의 원칙과 절차, 민변의 의견표명 방식에 관한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음.**
정치적·정파적 접근을 지양하고 법률가단체로서 형사사법제도의 법적 효과와 장단점을 전문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의견,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의자·피고인·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민변의 의견표명 방식과 관련해서는 가능한 범위에서 단일한 입장을 내되, 충분한 숙의와 설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견이 큰 쟁점에 대해서는 소수의견 또는 복수의견을 함께 표시하거나 설문 결과를 공개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경찰개혁과 경찰권 통제, 검·경 상호 견제 구조에 관한 의견도 반복적으로 제시되었음.** 검사의 권한 축소가 경찰권 비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경찰 수사역량 강화와 함께 경찰 수사에 대한 독립적·실효적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구체적으로는 수사심의위원회 실질화, 불송치 사건에 대한 외부적 검토체계, 경찰 내부 사건관리 체계 정비, 수사기간 관리, 경찰 사건번호 관리체계 개선 등이 제안되었음. 특정 기관에 권한을 집중하기보다 검찰과 경찰, 각 기관 내부 통제장치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포함되었음.
- **보완수사권 폐지 또는 조정에 따른 보완방안, 보완수사권 존치·전건송치·수사지휘에 관한 의견이 함께 제시되었음.**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시 수사지연, 부실수사, 부실기소, 경찰 수사결과와 고착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완수사요구 제도의 실효성 확보, 재수사 요청 제도 개선, 해외 제도 참고 등 구체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반대로 부작용 해소를 위해 반드시 검사의 직접 수사권 일부 부여 방식만을 택할 필요는 없고, 수사지휘·협력체계, 전건송치 또는 제한적 송치, 독립적 심사기구 등 다양한 방식의 제도설계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음.
- **피해자 보호와 취약계층 권리 보장에 관한 의견도 의미 있게 제시되었음.** 검찰개혁 논의가 권력기관 간 권한 배분 문제에 머물지 않고, 아동·장애인·여성 등 취약한 위치에 있는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과 권리구제를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 수사기록 열람·등사권, 피해회복과 손해배상, 양형절차에서의 피해 반영, 피해자 조력제도 강화 등이 함께 제안되었음.
- **기소권 통제, 수사기관 설계, 형사사법제도 전반의 구조 개편에 관한 의견도 있었음.** 검찰의 정치성은 수사권뿐 아니라 기소권, 불기소권, 검사와 법관의 조직문화 및 성장경로와도 관련되어 있으므로 기소권 통제 방안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기소법정주의, 독립적인 수사절차법 제정, 공수처·중수청의 구성과 운영 방식,

검찰·경찰·법원 등 사법기관 전반에 대한 제도적 통제와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음.

- **그 밖에 형사절차 실무 개선과 피의자·피고인의 권리 보장에 관한 의견이 제시되었음.**

수사기간 제한 규정의 실효화, 불송치 이의신청 기간 신설, 양형기준 재검토, 국민참여재판 확대, 평결방식 개선, 국선변호인 관련 규정 정비 등 개별 입법·실무 개선 제안이 있었음. 피해자 권리 보장과 함께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 변론권, 형사절차의 적정절차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포함되었음.

III. 결론

-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에 관한 기본 입장에서는 ‘부분 존치’가 185명(45.9%)으로 가장 많았고, ‘전면 폐지’ 126명(31.3%), ‘전면 존치’ 85명(21.1%) 순으로 나타났음. 이는 검사 보완수사권에 관하여 회원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줌.
- 전건송치 제도에 관해서는 ‘현행 유지’가 174명(43.2%)으로 단일 선택지 중 가장 많았음. 뒤이어 중대 강력범죄 등에 한정된 ‘부분적 전건송치 제도 도입’이 96명(23.8%), ‘완전한 전건송치 제도 복원’이 95명(23.6%)이었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조건으로 한 ‘조건부 전건송치 제도 마련’은 27명(6.7%)이었음. 이로써 전건송치 제도에 관해서도 회원 간 의견 차이가 확인됨.
- 보완수사권을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그 행사 방법에 관해서는 ‘강제수사도 가능하다’는 응답이 226명(64.9%), ‘임의수사만 가능하다’는 응답이 122명(35.1%)으로 나타났음.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경우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강제수사 허용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함을 알 수 있음.
-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시 필요한 제도적 보완방안(복수응답)으로는 ‘보완수사요구 제도의 실효성 강화’ 292명(78.3%), ‘재수사 요청 제도의 개선’ 219명(58.7%) 순으로 응답이 많았음. 보완수사권 부분 존치 시 범위 및 요건(복수응답)으로는 ‘동일성 유지 범위 내 허용’ 215명(62.5%), ‘법정 시한이 임박한 경우’ 150명(43.6%), ‘특정 범죄 한정’ 135명(39.2%) 순으로 나타났음.
- 피해자 권리 보장과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공감대가 확인되었음. 경찰 사건종결권 유지 시 피해자 권리구제 방안(복수응답)으로는 ‘불송치 이유 기재 의무화 및 상세화’ 351명(87.1%), ‘피해자 이의제기권 신설’ 321명(79.7%),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부여’ 302명(74.9%) 순으로 나타났음. 또한 형사 절차 전반에서 우선 포함되어야 할 피해자 권리

보장 방안(복수응답)으로는 ‘수사 진행 상황 통지 의무화’ 324명(80.4%), ‘수사기록 열람·등사권 허용’ 319명(79.2%), ‘피해자 참가제도(또는 부대공소제도) 도입’ 268명(66.5%), ‘재정신청 제도 실질화’ 239명(59.3%), ‘양형심리를 위한 판결전조사 도입’ 216명(53.6%) 등이 주요하게 제시되었음.